

TAX UPDATE 2018 / 2019

WWW.CHLKCPA.COM



CHOI HONG LEE & KANG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ONSULTANTS

2018 TAX RATE

개인 소득 세율 (7단계) : 10%,12%,22%,24%,32%,35%,37%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부부공동 \$24,000, Head of Household (HOH) \$18,000, 싱글과 부부개별 \$12,000)
Personal Exemption은 없어졌습니다.

회사 소득 세율 (C-Corp) : 21 %

MORTGAGE INTEREST LIMITS

2017년 12월 15일 이후의 주택구입시 부부공동보고일때 대출금의 \$750,000 (\$375,000 for Married Filing Separately)까지의 이자가 공제되지만, 이전 (Before 2017년 12월 15일)의 모기지들은 종전대로 대출금의 \$1,000,000까지 이자가 공제됩니다.

2018년부터 집 구입 및 증축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Home Equity Loan 의 이자 공제는더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PROPERTY TAX LIMITS

2018년부터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사항중 Tax (Property Tax, State Income Tax, etc.) 공제는 \$10,000 (MFS은 \$5,000)로 제한됩니다.

IRC §199A : SMALL BUSINESS DEDUCTION

S-Corp, Partnership, 자영업 (Sch C)에 의해서 발생한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최대 20%까지 개인소득 신고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Specified Service Businesses (Health, Law, Accounting, Financing Services, Brokerage Services, Performing Arts, Athletics, etc.)는 조정소득이 소득제한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Business에서 소득제한을 초과한 경우, 급료의 50%나, 급료의 25% + 조정전 고정자산의 2.5%를 합한 금액중 큰 금액이 소득공제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 구간은 부부공동보고 일때 \$315,000 - \$415,000 (그외에는 \$157,500 - \$207,500)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ILD TAX CREDIT

2018년부터 Child Tax Credit이 조건에 맞는 17세 미만 자녀당 \$2,000 (\$1,400 Refundable)로 늘어났습니다. 부부일때는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 \$400,00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Credit)가 줄어들고, Single 이나 HOH는 \$200,000 이상일 때부터 세액공제 (Credit)가 줄어듭니다.

MEDICAL EXPENSE DEDUCTIONS

IRS에서 인정한 의료비용이 납세자의 조정소득 (AGI) 7.5% 이상일 때부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IRS에서 의료비로 인정하는 의료 항목 (Weight Loss Program 등)의 폭이 넓어졌으나, 의료용 마리화나는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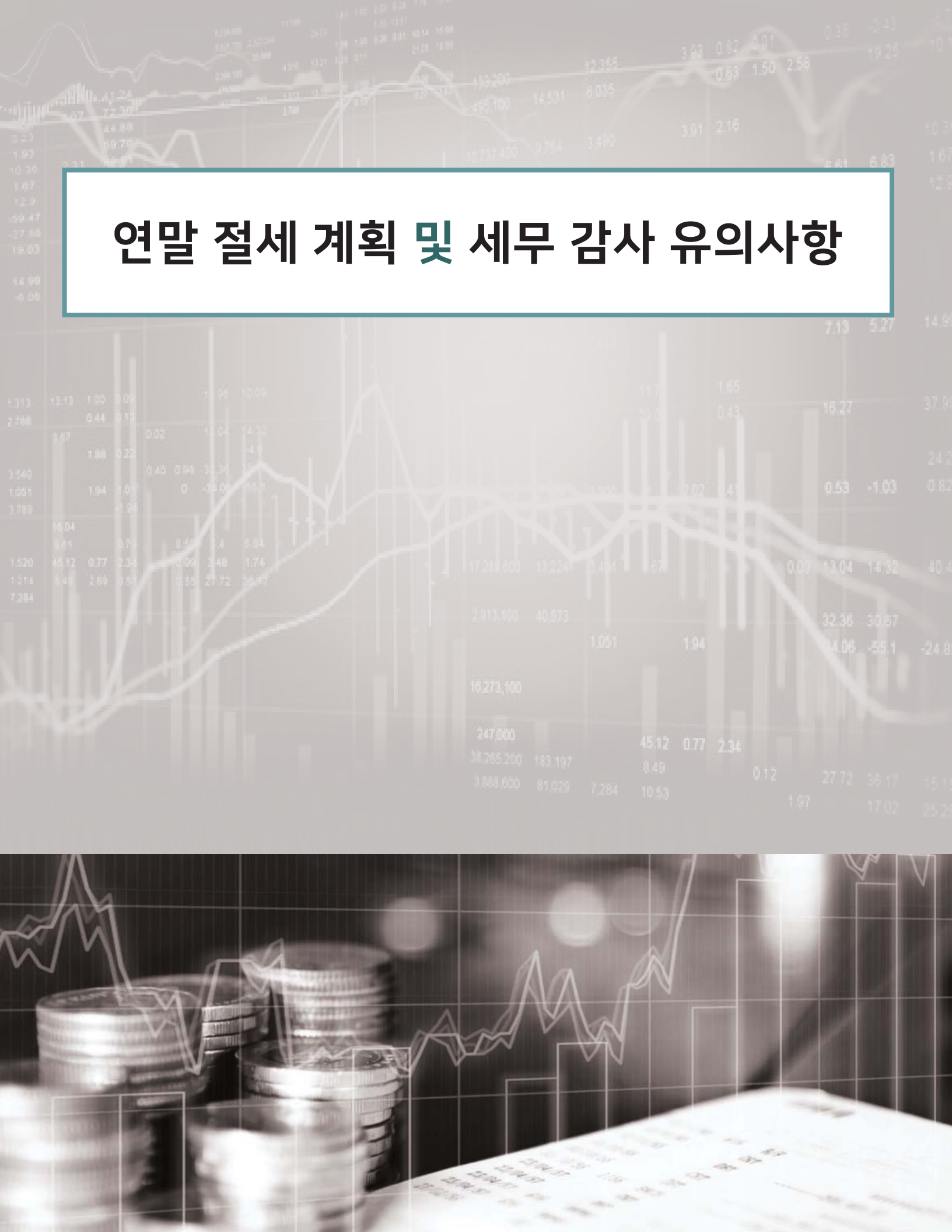
QUALIFIED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S CREDIT

2018년동안 New Plug-in Electric Drive Vehicle을 구입하신 경우, 최소 \$2,500에서 최대 \$7,500까지 세액공제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용량 (Kilowatt-hours)에 따라 세액공제액 (Credit)이 증가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액공제 (Credit)가 아닌 보상금 (Rebate)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최소 \$900 에서 최대 \$5,000까지, Low Income인 경우 최대 \$2,000까지 추가 보상금 (Rebate)이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Rebate)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과세소득 (Taxable Income)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RESIDENTIAL ENERGY EFFICIENT PROPERTY CREDIT

태양열, 지열, 풍력을 이용하는 가정용 난방, 온열 시스템 등을 2017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설치했거나 또는 설치할 예정인 경우, 지불된 모든 비용의 30%까지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절세 계획 및 세무 감사 유의사항



CONTRIBUTION TO RETIREMENT SAVINGS

직장에서 제공하는 Retirement Savings Plan (401(k), SEP IRA 등)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불입 한도액은 401(k)의 경우 \$18,500 (50세 이상 \$24,500)이고,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은 \$55,000입니다. 2019년의 경우 401(k)는 불입 한도액은 \$19,000 (50세 이상 \$25,000)이며, SEP IRA은 \$56,000입니다.

RETIREMENT PLANS: TRADITIONAL IRA AND ROTH IRA

1인당 \$5,500 (50세 이상 \$6,500)까지 IRA계정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2019년 4월 15일까지 불입해야 합니다.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며 조정 소득 (Conversion Income)의 제한은 없지만, 조정소득에 대한 세금 (그동안 Traditional IRA를 통해 받은 세금공제 혜택을 돌려주는 의미) 을 고려해야 합니다.

DISTRIBUTION OF RETIREMENT ACCOUNT

59 ½세 이전에 IRA 계정에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은퇴계좌로 전환 (Rollover)을 위해 인출한 금액을 60일 이내에 다른 계좌로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10%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IRA 가입자가 인출금을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에 사용한 경우, 일생에 처음 집을 구입시 사용한 경우 또는 대학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10% 벌과금에서 면제됩니다.

GIFT TAX / ESTATE TAX EXCLUSION

2018년의 경우, 수증자 1인당 \$15,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5,000 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Gift Tax Return은 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누적 증여액 \$11,180,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연계되어 있으므로 증여를 결정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OREIGN-EARNED INCOME EXCLUSION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발생한 소득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1인당 \$103,900, 부부인 경우 \$207,800까지 (2018년 기준) 해외근로소득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과세 주거지 (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지난 12개월 중 외국 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Physical Presence)이었거나 Bona Fide Residence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동안 어느 한 시점이라도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했다면 개인 세금 보고시 해외계좌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계좌에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 또는 실질적인 관리권한 (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00,000 혹은 계좌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2011년부터 모든 은행 계좌, 보유 주식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시가 기준)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합니다.

- **연말 기준** : 미국 거주시 부부 \$100,000/Single \$50,000,
외국 거주시 부부 \$400,000/Single \$200,000
- **연중 최대잔고**: 미국 거주시 부부 \$150,000/Single \$75,000,
외국 거주시 부부 \$600,000/Single \$300,000

PRINCIPAL RESIDENCE

소유한 주택에 최근 5년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택판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 (Single), \$500,000 (부부)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INVESTED DIVIDENDS

재투자된 배당금은 처음 주식을 구입한 금액과 함께 원가에 포함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CAPITAL GAIN (LONG-TERM)

Rate	Taxable Income Breakpoint			
	Single	부부(MFJ)	부부개별보고 (MFS)	외부모 (HOH)
0%	\$38,600	\$77,200	\$38,600	\$51,700
15%	\$425,800	\$479,000	\$239,500	\$452,400
20%	No Breakpoint			

조정 소득 (AGI)에 따라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INVESTMENT INTEREST

투자 시 발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투자 이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해당년도에 미사용된 이자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STALLMENT SALE

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대금을 분할 상환 (Owner Carry) 하면, 이익금을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채권 등은 제외).

NET OPERATING LOSS (NOL)

2018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손실 (NOL)의 80%까지만 소득을 상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CA에서는 100% 사용가능) 남은 손실은 다음해로 무제한 Carryover가 가능하지만 이전해로 Carryback은 Farming Loss와 Insurance Loss일때만 가능합니다. (2017년까지의 NOL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UTOMOBILE EXPENSE

2018년도 표준 공제율은 Mile당 54.5¢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개인목적 및 사업목적으로 혼용하신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 비율만큼 경비가 처리되므로 사업용 Mileage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택에서 사무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Commuting에 해당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AD DEBT, CASUALTY AND THEFT LOSS

외상 매출금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 도난 및 재난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179 AND SPECIAL DEPRECIATION

2018년 부터 \$2,500,000 미만의 장비 구입시 \$1,000,000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8일부터 자격이 되는 새 장비 혹은 중고 장비 구입시에도 100%까지 Bonus Depreciation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MEAL & ENTERTAINMENT

2018년 부터 Client Entertainment에 대한 Deduction이 사라집니다. (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고, Travel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됩니다. Clients와의 식사는 종전과 같이 50% 공제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Holiday Parties, Company Picnics, and Other Occasional Employee Appreciation Events는 종전과 같이 100% 공제됩니다. 이벤트 진행시 행사비와 식비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 식사비 공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ENSION PLAN

기존의 은퇴연금 계정에 최대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Pension Plan이 없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SEARCH ACTIVITIES CREDIT

사업상 사용된 Research 비용이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250,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 TAX AUDIT 유의사항

SOURCE OF LIVING EXPENSE

보고하신 소득보다 생활비 및 지출금액이 많은 경우, 자금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OF FUND

부동산 및 사업체 매입 시, Down Payment의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ANK DEPOSIT

만약 은행 입금이 보고되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Check Copy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입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HARITABLE CONTRIBUTION

현금을 \$250 이상 교회 및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현금 확인서를 받으시고, \$250 미만을 기부하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Canceled Check 등) 보관해야 합니다. \$5,000 이상의 현물을 기부하신 경우, 감정사의 싸인이 포함된 서류가 세금 보고서 필요합니다.

SEPARATE BANK ACCOUNT

모든 Business 수입은 Business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Business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Check를 사용하여 Transfer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ASH TRANSACTION

은행 거래 시 \$10,000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방 국세청 (IRS)에 보고됩니다. \$3,000 이상 \$10,000 이하의 현금거래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보관한 뒤 정부 요구 시 제출합니다. 현금 거래 보고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10,000 이하로 분할 입출금한 의도가 보일 경우에도 IRS에 보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Business 거래에서 연간 \$10,000 이상의 현금을 한명의 손님에게 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INCOME TAX AUDIT 유의사항

FOREIGN GIFT

2018년에 외국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 혹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16,111 이상 증여받은 경우,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Form 3520 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FORM 1099 FILING REQUIREMENT

Form 1099 Filing Requirement이 강화되어 Due Date까지 보고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Form 한건당 \$50 ~ \$270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해야 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CORD KEEPING

Bank Statement, Canceled Check,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자료는 세금보고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주거용 혹은 상업용 부동산 구입관련 서류 (Escrow Paper등)을 해당 세금보고 후 4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AUDIT NOTICE

감사를 통보 받으시면,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혹은 가정으로 감사관이 불시 방문하는 경우, 감사관의 신원과 방문사유를 확인하시고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CHOI HONG LEE & KANG LLP

임직원 일동 올림

W W W . C H L K C P A . C O M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1700 F: (213) 365-1726

Advisors

Jung Gil Choi (Inactive)	: 213-365-1700
Sung Ha Hong (Inactive)	: 213-365-1700
Spencer S. Moon	: 213-365-1700
Jay Chung	: 213-365-1700

Partners

Ilsup (Tommy) Lee	: 213-639-6285
Ik Su (Justin) Kang	: 213-639-6296
Soh Yun Kang Park	: 213-550-2182
Kyu J. Kim	: 213-550-1277

Managers

Samantha Kang	: 213-550-2183
Chang Kwon Moon	: 213-550-2184
Amy Lee	: 213-639-6295

Staffs

Haley Jeehea Ahn	: 213-481-5486
Seongho (Chris) Kim	: 213-550-2091
In Joo Moon	: 213-550-2185
Jhee Sue Yang	: 213-365-1700
Jitaek (Jason) Kim	: 213-481-5474
Insu Na	: 213-365-1700
Dayoon Park	: 213-550-2186
Sharon Cha	: 213-427-9595
Erika Oh	: 213-550-2090

TORRANCE OFFICE

3820 DEL AMO BLVDS., SUITE 220, TORRANCE, CA 90503 T: (310) 542-6373 F: (310) 370-5565

Advisor

Hong Won Suh	: 310-542-6373 ext.705
--------------	------------------------

Partner

Youngsun (Judy) Rufsvold	: 310-542-6373 ext.701
--------------------------	------------------------

Staffs

Seo Won Choi	: 310-542-6373 ext.702
Elly Lim	: 310-542-6373 ext.703